

대구지방법원 2016. 5. 25 선고 2016가단572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지원산업개발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5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B 대 115.4m²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5. 12. 29. 접수 제85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어재원

별지